

신구조문 대조표

4-1-25 성과관리센터 규정

현 행	개정안	개정 이유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칙 제 80조에 의거 대학의 성과 분석 및 환류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성과관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칙에 따라 대학의 성과 관리와 환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과관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학칙 조문 번호 삭제 및 목적 명확화
제2조(업무)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을 수행한다. 6. 정보공시, 고등교육통계 등 성과관리 관련 대외업무 7. 각종 평가 항목별 지표관리 8. 카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	제2조(업무)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. 6. 대학 정보공시, 고등교육통계 조사 등 성과관리 관련 대외업무 7. 각종 평가 지표의 관리 및 실적 점검 8. 그 밖에 성과관리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	오기 수정, 용어 통일 및 실제 업무 반영
제3조(조직)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센터 의 원활한 업무 수행 을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두며 연구와 자문을 담당할 교직원을 둘 수 있다.	제3조(조직)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 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, 필요한 경우 연구와 자문을 담당할 교직원을 둘 수 있다.	센터장과 소속 인력의 역할 및 문장 명확화
제4조(성과관리) ① 센터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운영을 위해 매년 성과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전 구성원과 공유한다. ③ 센터는 매해 대학의 성과 평가 분석 보고서 를 작성 하여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 고 최종 결과는 구성원과 공유한다.	제4조(성과관리) ① 센터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와 환류체계 운영을 위해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, 수립된 기본 계획 을 전 구성원과 공유한다. ③ 센터는 매년 대학의 성과 결과를 종합·분석하고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 며, 그 결과를 구성원과 공유한다.	성과관리의 계획·분석·개선·이행점검 절차 명확화

현 행	개정안	개정 이유
④ 각 부서 및 스쿨은 성과평가분석 결과에 따라 도출한 개선방안을 환류하여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 활용한다. ⑤ 성과평가 분석 보고서는 성과관리 기본계획 이행점검, 자체평가보고서, 운영실적보고서, 우수성과 사례집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.	④ 각 부서 및 스쿨은 제3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수립·이행하고,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업무 개선에 반영한다. ⑤ 센터는 제4항에 따른 개선과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⑥ 제3항에 따른 성과관리 결과보고서는 성과관리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, 자체평가보고서, 운영실적보고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.	
제5조(성과관리위원회) ① 대학의 성과관리 전반의 사항과 센터 운영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‘성과관리위원회’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 외로 구성한다.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 외에 간사를 둘 수 있다.	제5조(성과관리위원회) ① 대학의 성과관리 전반과 센터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‘성과관리위원회’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	위원회 기능과 구성 문구 명확화
제6조(위원회 회의 및 기능) ① 위원장은 필요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2. 대학의 성과 평가, 평가 결과 분석, 환류, 개선 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. 카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	제6조(위원회 회의 및 기능)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2. 대학의 성과 평가, 평가 결과 분석, 환류,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	회의 소집 문구 및 심의사항 정비
제7조(기타) 카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	제7조(기타)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	용어 정비